

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조직의 합리적 조정으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·면·동사무소, 군내출장소(이하“읍·면·동사무소”라 한다)에 주민자치센터(이하“주민자치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1. 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등 자치센터운영의 원칙을 정함. (안 제3조)
2.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·복지·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 수행 등 자치센터의 기능을 정함. (안 제5조)
3.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강사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9조)
4.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, 수강료,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0조)

5.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·면·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며, 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·운영 및 주민의 문화·복지·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함. (안 제15조, 제16조)
6. 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며,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7조)
7.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23조)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지방자치법

제8조 (事務處理의 基本原則)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住民의 편의 및 福利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地方自治團體는 組織 및 운영의 合理化에 노력하고 그 規模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.

③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이나 上級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위반하여 그 事務를 처리할 수 없다.

- 지방자치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조직의 합리적 조정으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적합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,

나. 내용타당성

- 내용면을 볼 때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주요업무 처리내역은
 - 통계, 선거, 재해·재난관리 업무
 - 각종고지서 송달업무
 - 청소, 환경, 위생, 상·하수도 등 생활민원 업무처리로, 사무의 이관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변동 및 지역특성에 따른 효율적인력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,
- 동 제정조례안 내용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자치위원의 위촉 및 해촉을 동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못박은 것으로 또 하나의 행정 하부조직을 만드는 것이라 판단됨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